

# 미국 · 호주, 자유무역협정(FTA) 주요 내용

미국은 이스라엘(1985), 캐나다(1989), NAFTA(1994), 요르단(2001), 칠레(2004), 싱가포르(2004)와 FTA를 체결하였고, 2004년에는 호주, CAFTA(미국-중남미 및 도미니카 FTA)공화국, 모로코, 바레인 등과 FTA를 체결하였고, 현재에는 SACU(남아프리카관세동맹), 파나마, 안데스국가, 태국 등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다.

2003년 3월 협상을 개시한 미국 · 호주간 FTA는 1년여 간의 협상을 거쳐 2005년 1월 1일부터 발효에 들어갔다. 그 동안 미국이 FTA 추진한 국가는 이스라엘, 요르단처럼 정치적 고려에 의해 추진된 국가 또는 미국보다 농업경쟁력이 낮은 국가가 대부분이었는데 비해, 호주는 미국보다 전반적인 농업의 경쟁력이 높은 국가로서 미국이 FTA 협상에서 어떻게 양허했는가는 현재 여러 나라와 FTA 추진하거나 고려중인 우리나라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리라고 본다.

## 1. 추진배경

미국 · 호주간 FTA 협상은 2003년 3월에 시작된 이래 양국 정상은 FTA 타결에 중점을 두어왔다. 동 협상은 2004년 2월 8일에 종결되었고, 양국은 동년 5월 18일 협정문에 서명하였다. 미국 의회가 2004년 7월 협정문을 승인한 후 동년 8월 3일 대통령이 최종 서명함으로써 미국내 입법절차를 마쳤다.

미국·호주의 FTA는 1988년 미국이 캐나다와 FTA를 체결한 이래 미국이 선진국과 체결한 최초의 FTA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동 협정은 최근 세계화된 경제를 고려한 21세기에 첫 번째 미국의 FTA 협정인 셈이다. 양국은 FTA를 통해 전반적인 시장접근을 개선하고 지적재산권, 서비스, 정부조달, e-commerce, 투자 등에서도 상호 접근성을 높여 갈 전망이다.

미국·호주간 무역 및 투자규모는 날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3년의 경우 호주는 미국의 14번째 상품수출시장이다. 양국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규모는 1993년보다 53% 증가한 290억 달러에 달한다. 양국간 투자 규모는 610억 달러에 이른다.

전체 상품교역 규모에서 미국의 대 호주 수출이 호주의 대미 수출보다 앞선다. 이에 따라 미국은 대 호주 교역에서 90억 달러 정도의 무역흑자를 기록하였다. 호주는 미국의 항공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기계 컴퓨터 및 전자제품, 화학제품, 목재 및 펄프의 주요시장이다. 그러나 농산물에 무역에 있어서는 반대의 상황이다. 호주의 대미 농산물 수출이 미국의 대 호주 그것보다 많다. 2002년의 경우 호주는 18억 달러의 농산물을 미국에 수출한 반면 미국은 4억 2,000만 달러를 호주에 수출하였을 뿐이다.

## 2. 상품의 시장접근 분야

### 2.1. 관세

일부 예외조치를 제외하고 별도의 관세인하계획(Annex 2-B)에 따라 모든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그러나 즉시관세철폐품목은 농산물 전체품목의 66%에 불과하고 설탕은 제외)한다.

부록 2-A에서 양국간 협정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관세를 인상하거나 신규관세를 도입하지 않는다. 단 양국은 상대국에 취업하는 근로자가 직업상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방송 장비, 전시(display)목적 물품, 스포츠용 물품 등에 관해서는 면세 조치할 수 있다.

## 2.2. 비관세조치

협정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국은 어떠한 형태의 수입출입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그럼에도 양국은 상계조치 또는 반덤핑의 조치 이행을 위해 허용되는 수입허가 또는 수출가격을 차별할 권리 또는 의무를 지님을 상호 인정한다.

양국의 관세철폐의 기준은 2004년 1월 1일 현재 기본세율로 한다. 관세 철폐는 다른 곳에 명시하지 않는 한 다음의 다섯 가지 유형을 따른다. A유형은 협정 발효 즉시 관세를 완전 철폐한다. B유형은 협정발효 후부터 3년차까지 매년 균등 감축하여 협정 이행 4년째(2009년)부터 무관세가 적용된다. C유형은 협정발효 후부터 7년차까지 매년 균등 감축하여 협정 이행 8년째(2013년)부터 무관세가 적용된다. D형은 협정발효 후부터 9년차까지 매년 균등 감축하여 협정 이행 10년째(2015년)부터 무관세가 적용된다. E유형은 종전대로 무관세가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유형이 적용되는 품목들은 FTA 발효 이전에도 이미 영세율이 적용되던 품목들이다.

표 1 미국-호주간 FTA에서 관세 철폐 유형

유형	철폐 방식
A	· 협정발효 즉시 철폐
B	· 협정발효후 3년차까지 완전 철폐
C	· 협정발효후 8년차까지 완전 철폐
D	· 협정발효후 9년차까지 완전 철폐
E	· 종전대로 무관세 계속 적용

### 3. 농산물 분야

#### 3.1. 다자간 협력

양국은 농산물의 시장접근성을 상당정도로 개선하고, 모든 형태의 농산물 수출보조를 삭감하되 궁극적으로는 철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무역 질서를 왜곡시키는 국내보조를 삭감할 WTO 농업협상을 타결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이밖에도 양국은 WTO 및 다른 다자간 무대에서 제기되는 농업이슈에 대해 상호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한다.

#### 3.2. 농업위원회

양국은 양측의 대표단으로 구성되는 농업위원회를 설치한다. 농업위원회는

- ① 상호 농산물 교역 증진
- ② 농산물 무역장벽 조사
- ③ 농산물 수출경쟁 이슈 협의
- ④ 본 협정에서 제시되는 기타 사안 협의 등을 담당한다.

농업위원회는 1년에 최소한 1회 이상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 3.3. 수출보조

아래에서 허용되는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양국은 상대국으로 수출되는 농산물에 대해 수출보조를 유지하거나 새로이 도입하지 아니 한다. 수출보조가 허용되는 경우는 미국과 호주 이외의 다른 국가가 양국에 수출하는 농산물에 대해 수출보조를 지급하는 데 대해 수출국의 서면 요청에 의해 수입국(예컨대 호주)은 상대 수출국(예컨대 미국)과 대응조치 마련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수입국이 해당 조치를 취할 경우 수출국은 상대수입국에 대한 수출에 대한 수출보조지급을 금지해야 한다. 이는 제3국이 미국

또는 호주로 수출되는 농산물에 대해 수출보조를 지급하면 이에 대항하기 위해 수출국이 수출보조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지만, 수입국 스스로가 상계관세 등의 대응조치를 취하면 수출국은 다른 상대국에게 수출되는 농산물에 대해 수출보조를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 3.4. 농업긴급구제

시장접근 분야에서 관세 철폐를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부록 3-A (농업구제조치)에 제시된 조건과 열거된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추가적인 관세를 포함, 특정 농산물에 대한 전체 관세수준은 당시 최혜국대우관세 수준 또는 동 협정 발효 직전에 적용되던 최혜국대우 관세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양 국가는 농업구제조치를 투명하게 적용해야 한다. 농업구제조치를 발동한 국가는 발동 후 60일 이내에 상대국에게 서면으로 통고해야 하고 해당 조치와 관련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상대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구제조치를 발동한 국가는 상대국과 협의해야 한다. 농업구제조치의 운영에 대해 농업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으며, 농업위원회는 발동가격수준을 검토할 수 있다.

### 3.5. 관세할당제도 관리

수입국이 상대수출국이 제3국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을 늘려 자국에 대해 관세할당제도가 적용되는 품목의 수출을 늘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수출국은 수입국의 서면요청에 의해 해당 상황을 개선시킬 조치를 강구하는 것에 대해 수입국과 협의해야 한다.

### 3.6. 낙농제품 시장접근보장 약속에 대한 검토

상대국의 요청에 의해 FTA 협정 이행 20년 이후에 낙농제품에 대한 시장접근 보장 약속을 조정할 수 있다. 낙농제품 시장접근에 대한 약속이 변할 경우 새로운 약속이 종전의 것을 대체한다.

### 3.7. 부록3-A: 농업구제조치

#### 3.7.1. 원예작물에 대한 가격기준 구제조치

미국의 FTA 협정 3.4에 규정에 의해 본 부록에 열거된 품목에 대해 호주로부터 수입되는 농산물의 수입가격이 발동가격 이하일 경우 농업구제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수입가격은 미 달러화로 표시된 FOB 수입가격에 기초해서 결정된다. 발동가격은 해당 품목의 역사적인 수입가격을 반영할 것이다. 유형별 농업구제조치 적용내용은

- ① 미 달러화로 표시된 수입가격과 발동가격과의 차이가 10% 이하일 경우 추가적인 관세를 미 부과
- ② 수입가격과 발동가격간의 차이(이하 관세차이라 칭함)가 10~40% 인 경우 최혜국대우 관세와 FTA 관세율표상의 관세 차이(이하 관세차이)의 30%의 추가 관세 부과
- ③ 관세차이가 40~60%인 경우 최혜국대우 관세와 FTA 관세율표상의 관세 차이(이하 관세차이)의 50%의 추가 관세 부과
- ④ 관세차이가 60~75%인 경우 최혜국대우 관세와 FTA 관세율표상의 관세 차이(이하 관세차이)의 70%의 추가 관세 부과
- ⑤ 관세차이가 75% 이상인 경우 최혜국대우 관세와 FTA 관세율표상의 관세 차이(이하 관세차이)의 100%의 추가 관세 부과

이러한 방식으로 농업구제조치가 적용되는 품목은 양파, 마늘, 토마토, 토마토 가공품, 아스파라가스, 배, 살구, 복숭아, 혼합과일, 오렌지주스, 포도주스, 토마토소스 등 33개 품목이다. 표 2는 품목별 발동가격을 나타낸 것이다.

표 2 품목별 발동가격

HS 세번	품목	발동가격 (US\$/kg 또는 US\$/ℓ)
0712202000	양파 가루	0.77
0712204000	건조양파(가루 제외)	1.26
0712904020	마늘가루	0.53
0712904040	건조마늘(가루 제외)	0.48
2002100020	1.4kg 이하의 용기에 담긴 조제토마토	0.41
2002100080	1.4kg 이상의 용기에 담긴 조제토마토	0.43
2002908010	1.4kg 이하의 용기에 담긴 토마토 페이스트	0.64
2002908020	1.4kg 이상의 용기에 담긴 토마토 페이스트	0.56
2002908030	1.4kg 이하의 용기에 담긴 토마토 퓨레	0.46
2002908040	1.4kg 이상의 용기에 담긴 토마토 퓨레	0.31
2002908050	조제토마토	0.69
2005600000	조제 아스파라거스(냉동제외)	1.59
2008400020	1.4kg 이하의 용기에 담긴 조제 배	0.65
2008400040	1.4kg 이상의 용기에 담긴 조제 배	0.58
2008504000	조제 살구	0.90
2008702020	1.4kg 이하의 용기에 담긴 조제 복숭아	0.32
2008702040	1.4kg 이상의 용기에 담긴 조제 복숭아	0.54
2008929030	1.1kg 이하의 용기에 담긴 혼합과일(배 또는 복숭아 포함)	0.83
2008929035	1.4kg 이상의 용기에 담긴 혼합과일(배 또는 복숭아 포함)	0.75
2008929040	오렌지 또는 자몽을 함유한 혼합과일	1.21
2008929050	기타 과일혼합	0.80
2009110020	0.946리터 이하의 용기에 담긴 오렌지 주스	0.23
2009110040	0.946~3.785리터 용기에 담긴 오렌지 주스	0.23
2009110060	3.785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긴 오렌지 주스	0.20

표 2(계속)

HS 세번	품목	발동가격 (US\$/kg 또는 US\$/ℓ)
2009124500	당도 20° 이하의 오렌지 주스	0.49
2009190000	기타 오렌지 주스	0.49
2009610020	비농축 포도즙 및 주스	0.56
2009610040	당도 20°이하의 포도주스 또는 과즙(농축, 냉동)	0.34
2009610060	농축, 비냉동 포도주스 및 즙	0.27
2009690040	냉동 포도주스 및 즙	0.32
2009690060	비냉동 포도 주스 및 즙	0.25
2103204020	1.4kg 이하의 용기에 담긴 토마토 소스	0.84
2103204040	1.4kg 이상의 용기에 담긴 토마토 소스	0.94

### 3.7.2. 쇠고기에 대한 물량기준 구제조치

미국이 FTA 이행 9년차부터 18년차까지 호주에게 양허한 TRQ 물량을 110% 초과한 해에 관세차이(MFN양허세율 - FTA 양허세율)의 75%에 해당 하는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3.7.3. 쇠고기에 대한 가격기준 구제조치

미국은 HS 02011050 등 6개 쇠고기 품목에 대해 가격기준 구제조치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구제조치의 목적으로 추가로 부과되는 관세수준은 최혜국대우관세의 65% 수준이다. 가격기준 구제조치의 발동 요건은

- ① 특정연도 전(前)분기 2개월간 월평균지수가격이 발동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당해 분기에 구제조치 발동
- ② 특정연도 4분기중 어느 달 (또는 3분기 마지막 달)의 월평균가격지수가 발동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4분기 나머지 달에 대해 구제조치 적용



여기에서 월평균지수가격(monthly average index price)는 미국 농업부가 발표하는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도체쇠고기(600-750 파운드)에 대한 가격 지수를 의미한다. 발동가격(24-month trigger price)은 과거 24개월간 평균가격지수의 93.5% 수준이다.

#### 4. 동식물 검역

동식물검역규정의 목적은 양국의 인간, 동식물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고, 동식물협정 이행을 촉진시키며, 동식물 검역 이슈를 검토하기 위한 포럼을 제공하며, 무역이슈를 해결하여 교역기회를 확대하는 데 있다.

양국은 협정 발효 30일 이전에 양측의 동식물분야 대표로 구성되는 동식물검역위원회를 설치한다. 동 위원회 설치목적은 동식물검역 협정 이행을 원활히 하고, 양국간 동식물검역 분야 협력을 촉진하여 양국간 무역을 촉진하는 데 있다. 동식물검역위원회는 양국의 동식물검역기구간 협력관계 증진을 추구하되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 ① 양국간 동식물검역조치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
- ② 동식물검역협정 이행과 관련된 이슈의 상호 이해 증진
- ③ 양국간 동식물검역 관련 이슈의 검토 및 해결
- ④ 양국간 무역에 영향을 주는 동식물 검역조치 협의 및 기술적 협력

동식물검역위원회는 FTA 협정 발효 45일 이전에 발족하고 1년에 1회 이상 개최한다. 위원회 회의결과는 연합위원회에 통보한다. 이와 더불어 양국은 동식물검역조치 실무 작업단을 구성한다.

##### 4.1. 부록 2-B: 미국의 관세 양허에 대한 일반 사항

미국·호주간 FTA에 따른 미국의 관세 인하는 2004년 1월 1일 현재 기본세율에 기초한다. 앞에서 제시한 A, B, C, D, E 다섯 가지 유형이외에도

- ① F유형: 협정발효 이후 18년차까지 관세가 연차적으로 인하되어 18년 차에는 무관세로 전환된다.
- ② G유형: 협정발효 이후 6년차까지 관세 감축이 유예된 후 7년에는 기본관세의 5.6%가 인하되고 그로부터 12년차까지 매년 5.6% 인하된다. 12년차부터 18년차까지 추가적으로 매년 11.1%씩 인하되어 18년 차부터 무관세로 전환된다.
- ③ H유형: 8년간의 관세감축유예 기간이 주어지고, 9년차부터 13년차까지 매년 6.7% 인하되고, 14년차부터는 18년차까지 매년 13.3%씩 인하되어 18년차부터 무관세가 적용된다.
- ④ I유형: 관세인하 또는 철폐 없이 기본세율이 계속 적용되는 품목들이다. 다시 말하면 관세인하 예외품목이다(예, 설탕 및 설탕제품).

이밖에도 J유형, TIUS, TXUS, T2US, T3US 등이 있는데, 이들은 농산물 관세 인하에는 해당되지 않는 유형들이다.

#### 4.2. 농산물에 대한 TRQ 운영 내용

미국은 호주와의 FTA 협상에서 쇠고기, 낙농제품, 땅콩, 연초, 목화, 아보카도, 포도주 등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관세인하대신 관세율쿼터를 적용하는 것을 선택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표 3>과 같다.

쇠고기의 경우 FTA 협정 발효 2년차부터 TRQ 물량을 매 2년마다 5,000톤을 증량하여 18년차까지 70,000톤으로 늘리고 19년차부터 쿼터제한을 철폐한다는 내용이다. 쿼터내 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가 적용되고, 쿼터외 물량은 H유형, 즉 8년간의 관세감축유예 기간이 주어지고, 9년차부터 13년차까지 매년 6.7% 인하되고, 14년차부터는 18년차까지 매년 13.3%씩 인하되어 18년차부터 무관세가 적용된다.

표 3 주요 품목별 미국의 TRQ 적용 내용

구분	내용
o 쇠고기	o 협정발효 2년차부터 18년차까지 매 2년마다 5천톤씩 증량한 후 19년차부터 쿼타철폐 o In Quota(IQ): 무관세, Out Q(OQ): H 유형 관세인하
o 크림 및 아이스크림	o 1년차부터 17년차까지 4%씩 증량, 18년차부터 6%씩 증량 o IQ: 무관세, OQ: I 유형관세인하
o 농축우유	o 1년차부터 17년차까지 6%씩 증량, 18년부터 6%씩 복리 증량 o IQ: 무관세, OQ: I 유형관세인하
o 버터	o 1년차부터 17년차까지 3%씩 증량후 18년차부터는 매년 3%씩 복리식 증량
o 무지방분유, 탈지분유	o 1년차 100톤에서 시작 17년차까지 매년 3톤씩 증량한후 18년차부터는 매년 3%씩 복리 증량 o IQ: 무관세, OQ: I 유형 관세인하
o 치즈 등 기타 낙농제품	o 호주에 대한 WTO TRQ는 철폐하되, FTA우대TRQ를 설정 17년차까지 쿼타 증량후 18년차부터 복리식 쿼터 증량 o IQ: 무관세, OQ: I 유형 관세인하
o 땅콩	o 17년차까지 연차적으로 쿼타 증량후 18년차부터 쿼타 철폐 o IQ: 무관세. OQ: F 유형 관세인하
o 연초	o 17년차까지 연차적으로 쿼타 증량후 18년차부터 쿼타 철폐 o IQ: 무관세. OQ: F 유형 관세인하
o 목화	o 17년차까지 연차적으로 쿼타 증량후 18년차부터 쿼타 철폐 o IQ: 무관세. OQ: F 유형 관세인하
o 아보카도 (2월1일~9월15일)	o 2년차부터 연차적으로 쿼타 증량후 18년차부터 쿼타 철폐 o IQ: 무관세. OQ: G 유형 관세인하
o 아보카도 (9월16일~1월31일)	o 2년차부터 연차적으로 쿼타 증량후 18년차부터 쿼타 철폐 o IQ: 무관세. OQ: G 유형 관세인하
o Goya 치즈	o 17년차까지 연차적으로 쿼타 증량후 18년차부터 쿼타 철폐 o IQ: 무관세. OQ: F 유형 관세인하
o 포도주	o FTA 협정발효후 7년까지는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그 이후 관세를 연차적으로 인하하여 11년차부터 관세 완전 철폐 (7년간 관세인하 유예후 3년간 관세인하 후 철폐)

크림 및 아이스크림은 FTA 이행 첫 해에 7,500리터에서 시작하여 17년차까지 매년 4%씩 증량한 후, 18년차 이후에는 6% 증량한다. 크림 및 아이스크림의 경우 18년차 이후에도 TRQ가 계속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농축우유에 대해서도 1년차부터 17년차까지 6% 증량한 후 18년차부터 6%씩 복리식으로 증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버터는 1년차부터 17년차까지 3%씩 증량후 18년차부터는 매년 3%씩 복리식 증량한다. 이밖에도 무지방탈지분류, 탈지분유, 치즈 등 기타 낙농제품도 유사한 방식으로 쿼터를 증량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점은 모든 유제품에 대해 17년차까지 쿼터를 증량해 나가되, 그 이후에도 TRQ를 계속 유지시켜 나간다는 점이다.

그밖에 땅콩, 연초, 목화, 아보카도, Goya 치즈 등은 17년차까지 쿼터를 증량한 후 18년차부터 쿼터를 철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땅콩, 연초, 목화에 대한 쿼터의 물량은 관세감축 F유형, 즉 협정발효 이후 18년차까지 관세가 연차적으로 인하되어 18년차에는 무관세로 전환된다.

아보카도와 Goya치즈의 쿼터의 물량은 G유형, 즉 협정발효 이후 6년차까지 관세 감축이 유예된 후 7년에는 기본관세의 5.6%가 인하되고 그로부터 12년차까지 매년 5.6% 인하된다. 12년차부터 18년차까지 추가적으로 매년 11.1%씩 인하되어 18년차부터 무관세로 전환된다.

포도주는 FTA 협정 발효후 7년차까지는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그 이후 관세를 연차적으로 인하하여 11년차부터 완전 철폐한다. 다시 말하면 포도주에 대한 관세는 7년간 관세인하 유예를 걸쳐 3년간 관세인하 후 철폐된다.

## 5. 시사점

미국은 자국보다 농업경쟁력이 높은 호주와 FTA를 체결함에 있어서 품목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관세 양허 방식 도입함으로써 해당 품목에 대하여 적응 기간을 부여한 점은 우리나라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미국은 닭고기, 돼지고기, 토마토, 카사바 등에 대한 관세는 3년간에 걸쳐 인하 후 4년차부터 철폐하기로 하였다. 요구르트 등 일부 낙농제품, 계란, 수박, 마아가린 등에 대한 관세는 9년에 걸쳐 인하한 후 10년차부터 철폐한다는 것이다.

낙농제품, 쇠고기, 목화, 땅콩, 연초 등 민감 품목은 관세율할당제도를 적용하여 보호하기로 하되, 최장 18년에 걸쳐 증량한 후 TRQ를 철폐한다는 것이다. 낙농제품은 18년 이후에도 TRQ를 운용하기로 되어 있다. 더구나 미국은 초민감품목인 설탕 및 설탕제품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FTA협상에서 기존의 TRQ 품목은 관세인하 또는 철폐보다는 TRQ 증량을 통해 보호하고, 관세인하 시에도 장기간의 이행기간을 요구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양파, 마늘, 쇠고기 등에 대해서는 구제조치를 적용하여 수입급증에 따른 미국 내 가격하락을 미연에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우리나라도 수입급증에 따라 국내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구제조치를 마련하여 FTA에 따른 국내가격하락과 농가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권오복 obkwon@krei.re.kr 02-3299-42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